

(사)한국산업응용수학회 정관

(2005년 1월 14일 정보통신부 개정 승인)

(2009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 개정 승인)

(2010년 3월 5일 지식경제부 개정 승인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산업응용수학에 관한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응용수학회라 칭한다(이하 본회라 한다).

제 3 조 (학회의 소재지) 본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응용수학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2. 산업응용기술 S/W연구 및 발표
3. 회지 및 문헌 발간
4. 산업응용수학 기술의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
5. 표준 및 규격의 제정
6. 산학협동의 증진
7.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
8. 위 각 항외의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5 조 (기구)

1.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 - (1) 사무국
 - (2) 각종 위원회
 - (3) 각종 연구회
 - (4) 지부
2.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회의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6 조 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,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.

1. 정회원 :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.
2. 학생회원 : 산업응용수학분야 또는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.
3. 명예회원 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.
4. 특별회원 :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.

제 7 조 (회원의 의무 및 권리)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.

제 8 조 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원의 징계 및 배상)

1.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2.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. 단,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20인 이내(회장 1인, 부회장 5인 이내)
2. 감사 2인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정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임원선임이 확정될 때 까지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.
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선출)

1.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.
2.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(회장단)에서 선출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.

제 14 조 (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)

1.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2. 회장의 궐위 시에는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최단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.

제 15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.
2.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3.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.
4.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
제 4 장 총 회

제 16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선임의 인준에 관한 사항.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.
3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.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.
5. 기타 중요한 사항.

제 17 조 (총회의 소집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.
2.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
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2.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19 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
1.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(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.
 - (2)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.
 - (3)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2. 총회 소집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3.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.

제 20 조 (총회 의결 제척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.
2.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1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회원인준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.
2.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.
3. 정관 및 규칙, 규정에 관한 사항.
4.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.
5.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.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.
7.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.

제 22 조 (의결 정족수)

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이사회회의 소집)

1. 회장은 년4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. 단,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3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 6 장 재 정 및 회 계

제 24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.
2. 찬조금 및 보조금.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.
4.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.
5. 기타 수입금.

제 25 조 (회계 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26 조 (예산)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
제 27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 28 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9 조 (해산법인의 재산 귀속)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 30 조 (정관 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1 조 (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시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